

주일한국기업연합회 동호회 운영 규칙(개정안)

2021년 7월 9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1. 목적

- 공통의 관심 분야를 가진 회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정보 교류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친목도모의 場 마련

2. 주요활동

- 동호회의 성격에 따라 활동 내용(년간 활동 횟수, 연간 지원 총액)은 동호회 별로 상이하게 운영

3. 동호회 구성

- 동호회 편성 조건

- 동호회는 한기련 회원사의 공동연구 및 취미, 신체단련으로서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여야 함

〈목적 적합한 동호회 예시〉

공동 연구	취미 활동	신체 단련
일본 역사	낚시	등산
일본 지리	바둑	테니스
니혼슈	당구	사이클링
와인	볼링	축구
	영화감상	골프

- ※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동호회 설립의 경우, 목적이 반드시 공동 연구, 취미 활동, 신체 단련 중 한 가지에 속하여야 함

- 동호회 설립은 한기련 회원사 3개사 이상, 최소 인원은 10인임
: 설립 희망서 제출 시 인원수 제한 없음. 설립 승인 후 한기련을 통한 동호회 홍보 및 회원 모집 후, 회원수 10인이 된 시점부터 동호회 활동 개시

- 동호회 회원은 한기련 소속 회원사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활동시 참가자의 80%이상이 회원이어야 함 (2020년 추가)

□ 동호회 설립 절차

- 설립을 희망하는 동호회는 향후 활동 내용 등을 기재한 ‘한기련 동호회 설립 희망서’ 를 작성하여 한기련 사무국에 제출
 ※ 동호회 설립 희망서 : 설립 목적, 연간 활동 계획 등 기재
- 한기련 사무국에서 동호회 활동 내용이 한기련 동호회 설립 취지에 합당한지 1차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한기련 회장단 회의에 심의 상정, 회장단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되면 한기련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회원사에게 공지 및 회원 모집 장려
- 해당 동호회는 회원사 10인 이상이 모집되면 연간 활동 계획과 회원사 수를 고려한 ‘연간 예산 계획 및 지원금 신청서’ 를 작성하여 한기련 사무국에 제출
- 한기련 사무국은 올해 신설 동호회의 연간 지원금을 취합하여 한기련 동호회에서 각 동호회별 지원금 배정 후 회장단의 승인을 거쳐 동호회에게 연간 지원금 통지

4. 동호회 운영

□ 동호회장

- 동호회장은 각 동호회를 대표하여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회원사 대표로 선임

□ 간사

- 동호회장은 동호회 내에서 활동을 도와 줄 간사를 지명

운영

- 동호회장과 간사는 동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해당 동호회의 개최일 및 장소 결정, 운영비 관리, 한기련 사무국에 개최 및 결과 통보 등의 역할을 가짐

한기련 홈페이지에 “동호회 활동” 메뉴 신설

5. 동호회 개최

- 동호회는 해당 동호회장이 소집 또는 해당 회원들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동호회장이 소집
- 동호회장 및 간사는 동호회 개최 전 사무국에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 해야 하며 개최 후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개최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6. 동호회 지원

- 동호회 연간 예산 계획 및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연간 예산 총액과 지출 예상 내역을 감안, 전체 한기련 예산 (동호회 예산 일백만엔) 범위 내에서 사무국이 동호회별로 年 지원액을 배정 후 회장단 승인을 받아 해당 동호회에 통보 및 시행
- 동호회 별 지원 총금액 및 1인당 상한금액은 동호회 활동 및 횟수, 회원수에 따라 결정
- 동호회 전체회원수의 3분의 1이상이 참가한 경우에 한해 지원
- 단, 개최전 사무국으로 사전 통보가 없거나, 개최 후 개최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동호회 활동 지원은 한기련 회원사 소속 회원에 한함 (2020년 추가)
- 한기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미스러운 활동이 있는 동호회는 지원을 중단함
- 상품권 구입은 지원하지 않음 (2021년 추가)
- 하나의 동호회에 한 회원사의 임직원 3명까지 지원함 (2018년 추가)
* A회원사의 임직원 5명이 하나의 동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3명에 한해 지원
- 상반기 지원금은 3월에 지급, 7월에 정산, 하반기 지원금은 7월에 지급 12월에 정산함 (2018년 추가)

◆ 동호회 설립 절차 요약

회원사 내 회원 사이에서 공통의 관심 분야(공동 연구, 취미 활동, 신체 단련 중) 발굴



동호회 설립 희망서(설립 목적, 연간 활동 계획)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



한기련 사무국에서 동호회의 활동 내용이 설립 취지에 합당한지 1차 평가 후 회장단 회의에 심의 상정 → 회장단 회의에서 설립 승인 → 사무국에서 해당 동호회에 승인 통보



한기련 사무국에서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신설된 동호회 안내 및 회원 모집 장려



해당 동호회는 회원수 10인 이상 모집되면 한기련 사무국에 ‘연간 예산 계획 및 지원금 신청서 (활동비×회원수 고려)’ 제출



한기련 사무국에서 기존 동호회와 2017년도 신규 동호회의 연간 지원금 취합 → ‘한기련 동호회 예산’에서 각 동호회별 지원금 배정 → 회장단 회의에 심의 상정 및 승인 → 사무국에서 각 동호회에 연간 지원금 통지



동호회 활동 개시